

의안번호	제 427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10월 일 (제 284 회)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조영재 의원 외 6인
발의연월일	2009년 10월 5일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번
호
안
호

발의연월일 : 2009년 10월 5일
발 의 자 : 조영재, 연만흠, 강태원
김환동, 박재국, 이필용
장주식의원(7인)

개정이유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시 지역개발채권 매입(150만원 한도)을 감면하고,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는 지역과는 달리 채권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개발채권 발행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2009년 10월 1일 기준으로 소급적용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채 매입 면제 대상(안 제8조 및 별표 2)

-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 면제
 - 단, 150만원까지만 면제함

나. 부칙

- 시행일 : 이 조례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 채권매입 면제 유효기간 : 별표2의 2. 사업 · 행
위 타목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참고자료

- 가. 관계법령 발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별첨)
- 나. 관련부서 협의 : 의견없음(정책관리실)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중 별표2의 2. 사업 · 행위란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의 등록. 단, 150만원까지만 면제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제2조(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 채권매입 면제 유효기간) 별표2의 2. 사업 · 행위 타목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별표 2]</p> <p>공채의 매입면제대상 <제8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th style="text-align: center;">면제대상 및 내용</th></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기관단체</td><td>가~차 (생략)</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사업행위</td><td>가~카 (생략)</td></tr> </tbody> </table>	구분	면제대상 및 내용	1.기관단체	가~차 (생략)	2.사업행위	가~카 (생략)	<p>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별표 2]</p> <p>공채의 매입면제대상 <제8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th style="text-align: center;">면제대상 및 내용</th></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기관단체</td><td>가~차 (생략)</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사업행위</td><td> <p>가~카 (생략)</p> <p>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의 등록. 단, 150만원까지만 면제함.</p> </td></tr> </tbody> </table>	구분	면제대상 및 내용	1.기관단체	가~차 (생략)	2.사업행위	<p>가~카 (생략)</p> <p>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의 등록. 단, 150만원까지만 면제함.</p>
구분	면제대상 및 내용												
1.기관단체	가~차 (생략)												
2.사업행위	가~카 (생략)												
구분	면제대상 및 내용												
1.기관단체	가~차 (생략)												
2.사업행위	<p>가~카 (생략)</p> <p>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의 등록. 단, 150만원까지만 면제함.</p>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p> <p>제2조(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 채권매입 면제 유효기간) 별표2의 제2.사업·행위 타목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관계법령발췌

□ 지방공기업법 제19조(지방채)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조례가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 매입대상별 금액, 채권등록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27, 2008.2.29, 2009.5.21>

1.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함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라 함은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라 함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라 함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연료전지자동차"라 함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천연가스자동차"란 천연가스(압축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8. "클린디젤자동차"란 경유의 연소가 기관의 내부에서 이루어져 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기관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하이브리드자동차나 천연가스자동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함은 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